

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3월 22일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3월 10일, 정재동, 운영희, 고영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3월 22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정재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명확히 함(안 제2조 신설)
-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5조)
- 동물의 구조·보호, 보호동물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20조에서 제21조 신설)
-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23조 신설)
- 반려견 놀이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24조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생활수준의 향상과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었으나, 올바른 반려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갈등이 대두되고 있어
-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 마련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- 본 조례 개정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동물 보호 복지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대주민 공감대 확산 및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고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- 다만, 급식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 조례를 근거로 동물보호단체 등에서의 급식소 설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
- 급식소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대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